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정선거 주장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위해
엄정중립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목차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 · 개표 바로 알기

Q&A

	사전투표	3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6
	개 표	8

1 사전투표

Q 사전투표기간 전에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한 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해두고 사전투표일의 실제 투표지와 교체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제도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에,
 - ①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 ② 어느 주소지의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 ③ 해당 선거인이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예측하여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해두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지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소 통신망은 안전한가요?

A 안전합니다.

- 사전투표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 · 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통신망으로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해킹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Q 사전투표용지에 서로 다른 지역의 도장이 찍힐 수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 사전투표용지의 우측 상단은 선거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시·도 또는 구·시·군)의 청인(廳印), 좌측 하단은 선거인이 방문한 사전투표소(읍·면·동)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私印)을 인쇄받습니다.
- 따라서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 상단과 하단에 찍히는 도장의 지역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관한 모든 것!

선거인이 투표소에 방문하면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하여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출력**합니다.

선거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청인(廳印)
선거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 **상단**과 **하단**의 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QR코드 :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위명, 일련번호의 총 3자리의 숫자로 구성

Q 같은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중복하여 투표할 수 있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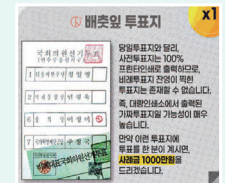
A 불가능합니다.

- 사전투표를 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전산상의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됩니다.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단말기(노트북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므로 재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지역구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일부가 겹쳐 인쇄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는 대량인쇄된 가짜 투표지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가짜 투표지가 아닙니다.

-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과정, 예컨대 지역구 투표용지에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배출구에 손을 대는 등의 원인으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단순 부주의로 인한 현상일 뿐 가짜 투표지가 아닙니다.



Q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소로 이송 전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투표함 또는 투표지 바뀌 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거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TIP!

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신청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하여 열람 가능함.



Q 사전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중 차 안에서 투표함 바뀌 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 등 수송 시 정당·후보자가 지정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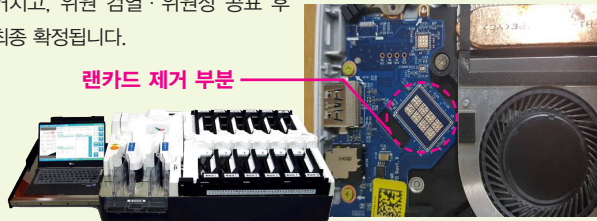
- 「공직선거법」 제176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 :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정당 또는 후보자별 1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기며,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인가요?

A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적 보조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는 통신장치(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며, 외부통신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수작업 개표의 정확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사무원에 의하여 재차 육안으로 확인·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고, 위원 검열·위원장 공표 후 최종 확정됩니다.



TIP!

「개함→투표지분류기 분류→육안 심사·확인→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로 이루어지는 개표의 전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위한 보조기계임.

Q 개표보고시스템이나 개표통신망을 이용해 개표결과를 전산조작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개표 전 과정은 정당·후보자별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 개표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 후 공표하여 확정됩니다. 개표소에서 개표결과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개표 보고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하여 선거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므로 개표소 내 결과와 개표보고시스템의 결과를 실시간 비교·대조 가능합니다.
- 개표보고시스템은 전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공표한 정당·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단순히 취합하고, 또한 취합된 개표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한 개표결과가 실제 개표결과이므로, 설사 개표보고시스템 입력수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 해킹에 의한 조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 또한 개표보고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일반인터넷망과 분리된 선거전용 폐쇄망으로 비인가 단말기가 접속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IP!

정당 후보자가 지정한 다수의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 게시된 개표상황표 사본과 위원회 홈페이지를 실시간 비교·대조가능하며, 개표참관인이 요청시 개표상황표 사본을 제공합니다.

Q

각 정당의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으로 일정한 것은 결과 조작 아닌가요?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득표비율	A당 후보자	B당 후보자
서울	63.92%	36.08%
인천	63.42%	36.58%
경기	63.54%	36.46%

A

아닙니다.

-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A당과 B당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부분만 비교하는 경우 63:36이지만,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비율이 모두 다르며, 양당 후보자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 해당 주장에서는 시·도단위의 득표비율을 계산하였으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결정단위는 시·도가 아닌 국회의원지역구입니다.
- 굳이 의혹을 제기하는 논리대로 양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비율만 비교하더라도 전체 지역구 253개 중 6.7%에 불과한 17개 지역구(서울 5, 인천 2, 대전 1, 경기 6, 강원 1, 제주 2)에서만 63:36의 비율이 나타나며, 해당 지역구도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또한 63:36 비율 뿐만 아니라,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과거 선거의 개표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63:36의 비율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별 후보자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과가 경합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수30 판결).

Q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투표 결과가 다른 것은 결과 조작 아닌가요?

A

아닙니다.

- 2020년 제21대 국선 이후 2022년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사전투표 참여 선거인과 선거일 투표 참여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일 뿐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참여 선거인과 선거일투표 참여 선거인의 정당지지 성향, 사전 투표율, 선거일 당일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투표 득표율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 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수30 판결).